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2. 20 선고 2023가단14530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윤화섭

피 고 1. A

2. B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주만
변 론 종 결 2023. 11. 15.
판 결 선 고 2023. 12. 20.

주 문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들과 소외 C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4. 22.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221,815,02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10,907,512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C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30030호 구상금 판결에 기하여 125,523,232원 및 이에 대한 2017. 12. 19.부터 2019. 3. 14.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바, 2023. 6. 27. 현재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액은 221,815,025원이다.

나. C은 2022. 4. 22.에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신의 자녀인 피고들과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2. 11. 3.에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다.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은 원고 등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각 110,907,51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원고가 C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2. 4. 22.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22. 11. 3.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그러나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등 참조).

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C의

아내이자 피고들의 어머니인 D의 소유였던 사실, C은 2022. 6. 30. 서울가정법원 2022느단2870호로 D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하여 같은 해 7. 14. 그 수리 심판을 받은 사실, D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상속포기를 한 C을 제외하고 2022. 10.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소송비용과 관련하여서는, 피고 측이 사해행위의 외관을 만들기도 하였던 점, 원고 측 입장에서는 충분히 채무자인 C의 공동담보가 감소하였다고 판단하여 소를 제기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각자 부담하기로 한다.

판사 정도영

[별지]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E, F에 있는 G아파트 H동

[도로명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I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 번호 : J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109.72㎡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서울특별시 송파구 E 대 16.697㎡

2. 서울특별시 송파구 F 대 538.6㎡

대지권 종류 : 1, 2 소유권대지권

대지권 비율 : 17335.30분의 66.304

- 이 상 -

